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32호

2024. 5. 1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1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2024-10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삼척시 고시 제2024-11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811호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2024-826호 2024년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 13
- 삼척시 공고 제2024-829호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16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4-10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근덕면 교곡리 산319-10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44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 계획내용(경미한 사항 변경)

-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면적 4,306㎡)
- 지구단위계획구역①(삼표 49광구) 면적 축소: 면적 137,378㎡
- 개발진흥지구①(삼표 49광구) 면적 축소: 면적 137,378㎡
-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 게재

라. 이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4-10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의 외제로 결정(변경)된(삼척시 공고 제2024-769호(‘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2024. 5. 3.)) 도시관리계획(소로1-2 신설, 소로3-27 변경)과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계획법」 제30조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8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2	10 ~ 13	국지 도로	1,273	중로2-3 원덕읍 임원리 726-6	공원3 원덕읍 임원리 487	일반 도로	하수도 1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소로	3	27	6.5	국지 도로	71	소로1-2 원덕읍 임원리 753	원덕읍 임원리 757-1	일반 도로	하수도 1	2006. 11. 17. (삼척시고시 제73호)	자연녹지지역 (2020. 6. 19. 삼척시-97호)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원덕읍 임원리 726-6 ~ 원덕읍 임원리 487 - 폭: 10m ~ 13m - 연장: 1,27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농어촌도로 원덕 309호선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소로3-27	소로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185m ~ 71m(감 11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소로1-2) 신설에 따른 중복구간 제외

다. 도시관리계획 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e음(<http://www.eum.go.kr>) 실음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4-111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증산동 도로(종로2류) 변경, 등봉동 도로(종로3류)와 주차장 신설, 남양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나. 계획내용

- 종로2-18(증산동) 변경: 폭 18.5m, 연장 250m
- 종로3-18(등봉동) 결정: 폭 12m, 연장 238m
- 주차장15(등봉주차장) 결정: 면적 21,736㎡
- 장사시설1(추모공원) 변경(경미한 사항): 면적 128,612㎡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1(쓰레기 위생매립장) 변경: 면적 149,445㎡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도면 및 지형도면

-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e음(<http://www.eum.go.kr>) 실음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4-811호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사항이 2023. 7. 21.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안전관리 시설 현황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3. 입법예고기간 : 2024. 05. 9. ~ 05. 29.(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환경과

- 전 화 : 033 - 570 - 3337

- 팩 스 : 033 - 570 - 3139

5. 참고사항

이 조례(규칙)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별지 제1호서식]

금종화장실 관리카드

전 검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 주체							직급			
	관리 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출생년월일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실	냉방 시설	냉방 시설	폭발 방지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 들)	탈취제 (방향제)	청소 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 항	금액 (천원)		

[개정안][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제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 치 년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 례 안 (시행규칙안)	검 토 의 권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826호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삼척시장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4. 06. 10. ~ 06. 20. 오전 10시~오후 4시(토·일 제외)
- 일자, 구역 및 장소

검사 일정		읍·면·동	검사 장소
6.10(월)	10:00~16:00	도계읍	도계읍 행정복지센터
6.11(화)	10:00~12:00	원덕읍 가곡면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14:00~16:00	원덕읍	임원출장소
6.12(수)	10:00~12:00	근덕면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14:00~16:00	노곡면	노곡면 행정복지센터
6.13(목)	10:00~12:00	미로면	미로면 행정복지센터
	14:00~16:00	신기면	신기면 행정복지센터
6.14(금)	10:00~16:00	교동	교동 행정복지센터
6.17(월)	10:00~16:00	성내동	성내동 행정복지센터
6.18(화)	10:00~16:00	남양동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6.19(수)	10:00~12:00	남양동	삼척농협 사직지점 (구 사직동사무소)
	14:00~16:00	하장면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6.20(목)	10:00~16:00	정라동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읍·면·동에서 검사일정에 검사 못한 경우 인접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음

※ 우천 시에도 검사 실시 예정(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증량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미만의 저울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체중계 및 저울에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되어 있는 저울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붙임" 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7.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 033-570-3369)

[붙임] 소재장소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업체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팩스번호

대상 계량기	계량기의 소재장소		정기검사기일
	종류	형식 또는 규격	수량

신청 사유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받을 사유(해당칸 v 표시)		
	<input type="checkbox"/>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다수의 계량기가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후단에 따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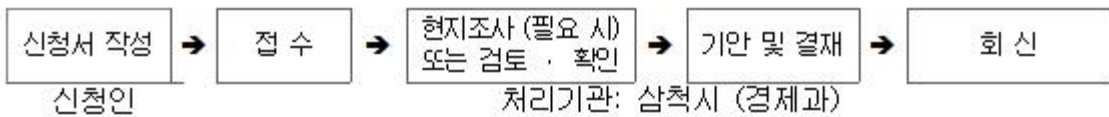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삼척시 공고 제2024-829호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삼척시장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삼척 문학상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제 삼척 문학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신설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삼척 문학상 주관 대상자 확대(안 제3조)

- (현행) 문화예술단체 → (개정) 법인·단체 등

나. 공모·홍보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시상 부문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이승휴 문학상 및 수상자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 정비(안 제6조)
- 라. 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 기능 및 운영 사항 정비(안 제7조~제11조)
 -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소집, 4분의 3 출석 개의
 - (개정) 재적위원 3명 이상 요구 소집, 과반수 출석 개의
 - 서면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 마.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2조)
 - (현행)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
 - (개정)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며 심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선정 후 시장이 위촉
- 바.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사. 문학상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591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홍보실
 - 전 화 : 033)570-3223
 - 팩 스 : 033)570-3132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대표 누리집(<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삼척시가 주최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이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시상 부문 및 인원)”을 “(시상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상 부문) 문학상은 창작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상자의 자격)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서, 과거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학상”을 “시장은 문학상”으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학상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운영위원회 구성)”을“(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학상 운영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시 문화예술팀장이 된다”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

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문화홍보실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 2. 문학 부문에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운영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2항 전단 중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을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로, “기피신청”을 “기피(忌避) 신청”으로, “있다”를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의 제목“(위원장의 직무 등)”을“(운영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를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로, “위원 중”을 “운영위원 중”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회의)”를“(운영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심사위원회 구성)”을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5명”을 “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문학상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출품자, 출품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문단 등단 경력 20년 이상의 문학인
 2.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문학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 문학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의 제목 "(수상자 결정)"을 "(수상자의 결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상자는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승휴 및 삼척"을 "삼척"으로, "작품"을 "출품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위원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학상"을 "시장은 문학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 중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주최 및 주관) 삼척 문학상 (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삼척시가 주최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3조(주최 및 주관) ① -----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p> <p>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이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4조(공모 및 홍보) 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모집 한다.</p> <p>② 이승휴 문학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월간 전문 문학지에 4회 이상(2개 문학지, 각 2회) 홍보를 의뢰한다.</p>	
<p>제5조(시상 부문 및 인원) ① 문학</p>	<p>제5조(시상 부문) 문학상은 창작</p>

상은 창작 부문에 한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승휴 문학상 1명
- 2. 삼척 문학상 대상 1명
- 3. 삼척 문학 작가상 1명

제6조(수상자의 요건) ① 이승휴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20년 이상의 작가로서 공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작품(또는 작품집)을 발표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삼척 문학상 대상 및 삼척 문학 작가상 수상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작가 중 삼척시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부문에 한정하여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수상자의 자격)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서, 과거 삼척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삼척 문학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학상 -----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 --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신설>

2.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부문별 문학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학상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의 -----
--

4. (현행 제3호와 같음)

5.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삭제>

<삭제>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포함하여 -----
-----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문학인, 문학평론가, 문학 관련 언론인·학자·전문가 등 문학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운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시 문화홍보실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문학 부문에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
--.

⑤ -----

--- 시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운영위원이 심의안건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 기피(忌避) 신청-----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4분의 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 운영위원 중---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12조(심사위원회 구성) <신설>

-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심사위원은 문단 등단 경력 20년 이상인 문학인 또는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문학상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삼척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 6
명 -----.

<삭 제>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없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신 설>

제13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예선심사
와 본선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
다.

- 1. 예선심사 : 심사위원들이 각
작품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채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
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 문학상을 주관
하는 자, 문학상을 주관하는 자
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 출판자, 출판자의 작품
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
원이 될 수 없다.

- 1. 문단 등단 경력 20년 이상의
문학인
- 2. 지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사
람
- 3. 그 밖에 문학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 문
학상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
는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서 결정한다.

<삭 제>

점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의 3배수의 본선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2. 본선심사 : 예선심사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 방식으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이승휴 및 삼척을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상작 발표) 수상 작품, 심사 경위, 수상소감 등의 심사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존과 수상 작품집 발간) ① (생략)
② 문학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삭 제>

② 삼척-----
출품작-----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④ -----
-- 알는다.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기록보존과 수상 작품집 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문학상-----

위하여 수상 작품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 중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 -----

-----,

[붙임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삼척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